

의안번호	2205020
의 퇴 인	이정헌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25.
추 계 번호	24B4619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0조의2 제4항(시청자미디어재단) 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	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(제4항) 3의2. 방송광고, 협찬·협찬고지 및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연계편성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3의3. 방송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0조의2 제4항(시청자미디어재단) 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사업 범위 확대(안 제90조의2제4항 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)

- 개정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사업 범위에 방송광고, 협찬·협찬고지 및 제75조의3제1항¹⁾에 따른 연계편성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, 방송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포함하

1) 안 제75조의3(연계편성의 금지) 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(이하 이 조에서 “연계편성 방송프로그램”이라 한다)에서 방송중이거나 방송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판매방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대에 편성(이하 “연계편성”이라 한다)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해당 상품을 방송하는 연계편성 방송프로그램과 동일한 시간대
2. 시청자의 상품구매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로서 해당 상품을 방송하는 연계편성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 또는 종료된 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시간대

② 제1항에 따른 연계편성의 세부적인 유형·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는 것임

- 현행 「방송법」 제90조의2²⁾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므로, 개정안의 시청자미디어재단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국가 등의 출연금 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
 - 2023년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수입 결산 현황을 보면, 수입 총액 533억 4,100만원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·분담금 등이 522억 7,200만원으로 98.0% 수준임

[표 1] 2023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수입 결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수입액(비율)	집행액(비율)	비고
① 정부지원금	47,847 (89.7)	46,202 (89.8)	9개 보조사업
② 지자체 분담금	4,406 (8.3)	4,232 (8.3)	10개 지역센터 운영비 분담(부산·광주 제외)
② 지자체 사업비 지원	19 (0.0)	19 (0.0)	전년도 지자체 분담금 잔액 활용(서울·경기)
④ 기타기관 협약사업	900 (1.7)	861 (1.7)	대전시 찾아가는 미디어교실 등 24개 사업
⑤ 기부금	167 (0.3)	115 (0.2)	공영쇼팽 등 2개사 기부금
⑥ 기타	2 (0.0)	- (-)	기부금관리계좌 이자 누적 등
총 계	53,341 (100)	51,429 (100)	

자료: 방송통신위원회

-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따르면, 개정안에 따라 방송광고, 협찬상품 연계 편성 실태조사 및 연구, 방송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방송광고, 협찬상품 연계편성 현황과약 모니터링 인력 고용, 실태조사 및 결과 분석 연구용역비 등 매년 4억 600만원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이중 어느 정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·지원금으로 충당하게 될지 알 수 없어,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2) 「방송법」 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.

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추가재정소요 내역

○ 연구용역비(2건): 50백만원 ³⁾ × 2건 = 100백만원
- 방송광고, 협찬상품 연계편성 실태조사 결과 분석 연구용역 및 방송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 이익 관련 연구용역
○ 방송광고, 협찬상품 연계편성 현황과약을 위한 인건비: 252백만원
- 모니터링 인력(5명)* × 2.8백만원(월)** × 12개월 = 168백만원
* 현재 시청자미디어재단 모니터링 분량 대비 인력 기준
** 현재 시청자미디어재단 인건비 적용 ⁴⁾
- 사업운영 및 관리 인력(2명) × 3.5백만원(월)* × 12개월 = 84백만원
* 현재 시청자미디어재단 인건비 적용
○ 방송광고, 협찬상품 연계편성 현황과약을 위한 운영비: 54백만원
- 사무공간 임차, 사무장비 구입, 회의사례비, 여비 등: 2백만원/월 × 12개월 = 24백만원
- 연계편성 영상 저장용 스토리지 : 30백만원 × 1식 = 30백만원

자료: 시청자미디어재단

3) 연구용역비 산출내역

(단위: 원)

구분		산출금액(원)	산출내역
연구인력 인건비	책임연구원	3,622,585	책임연구원 1명 * 10개월 * 참여율 10%
	연구원	12,499,875	연구원 2명 * 7.5개월 * 참여율 30%
	연구보조원	8,355,744	연구보조원 2명 * 7.5개월 * 참여율 30%
직접비	제경비	18,000,000	연구 수행을 위한 제경비
일반관리비	일반관리비	2,548,692	(인건비+제경비)의 6%
부가가치세		4,502,690	(인건비+제경비+일반관리비)의 10%
합계		49,529,586	

자료: 시청자미디어재단

4) 시청자미디어재단 직급별 인건비 단가

(단위: 원)

구분	평균단가(원)		
	보수	회사분 법정부담금	계
7급	36,762,472	6,698,877	43,461,349
모니터링	28,635,540	5,008,920	33,644,160

자료: 시청자미디어재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배아형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